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6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정혜경·전종덕·손 솔
최혁진·윤종오·박해철
용혜인·한창민·허성무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71조 중 “70에”를 “500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u> 1. (생 략) <u><신 설></u> 2. ~ 11. (생 략) <u><신 설></u>	제70조(기금의 용도) ①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u> 2. ~ 11.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 <u>금 지출액의 1천분의 700에 해</u> <u>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u> <u>금에 배분하여야 한다.</u>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 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따 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 천분의 <u>70에</u>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 여야 한다.	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 ----- ----- ----- <u>500에</u> ----- ----- -----.